

■ KAB 인정마크/OQS 인증마크 사용 기준

1. 마크의 크기

KAB 인정마크/OQS 인증마크(이하 인정/인증마크라 한다.)는 확대/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정마크의 크기는 가능한 가로15mm, 세로 10mm 이상이 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정/인증마크가 동시에 사용될 경우, KAB인정마크는 OQS 인증마크의 오른쪽 또는 아래쪽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인정/인증 마크의 예		
		
※ 인정/인증번호는 인증조직의 인증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2. 인증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KAB 인정마크는 단독사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OQS 인증마크와 같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마크는 인증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인증이 취소/정지된 경우에는 인정/인증마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합니다.

3. KAB 인정마크/OQS인증마크의 사용 가능한 경우와 제한되는 경우

KAB 인정마크/OQS인증마크는 인증 받은 분야와 관련이 있는 홍보물 등에 사용될 수 있으나,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마크 사용이 가능한 경우

- **광고 또는 홍보물:** 산업분류상 인증조직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명판, 명함 편지지, 브로슈어, 문서, 송장 등의 인쇄물 또는 제작물 또는 기타 광고 수단

— 인정마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제품 또는 제품 포장**
-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검사성적서, 시험성적서)**
- **깃발, 건물 또는 차량**

구 분	인증마크	문구포함
▪ 제품 및 단위포장, 유형라벨(Type label), 식별판	X	X
▪ 제품운송에 사용되는 대형 박스 등 (제품포장, 단위포장의 포장)	X	X
▪ 홈페이지/회사소개서(Instruction Manual)	○	○
▪ Catalog, 광고물, 명함	○	○
▪ 인증조직의 사용문서(Fax용지, 우편봉투 등)	○	○
★ 생산한 제품에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표준,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OQS가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범례 : ○(사용가능), X(사용불가)

■ OQS 인증마크의 사용 및 홍보 기준

1. 문서·광고 등에 인증표시 가능

문서, 송장, 광고 등에 인증표시, 인증기관명[(주)오큐에스인증원], 인증표준(ISO9001, ISO14001), 인증번호(OQS-QC-0000) 등을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임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예) (주)한국기업,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주)오큐에스인증원

2. 생산제품에 인증표시 제한(금지)

생산한 제품에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표준,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OQS가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

인증조직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의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예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사항

금지행위(법률.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시행령.제3조)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2. 기만적인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4. 비방적인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예시 - 인증기관이 아닌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ISO9001/14001/45001규격에 의한 인증은 생산공정 등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ISO9001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을 인증받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인증마크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마크를 계속 표시·광고하는 행위 - 객관적인 근거없이 세계 최초로 ○○부문에서 국제품질규격 ISO9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표시·광고 하는 행위	

4. 인증마크 오용 시 시정조치

인정마크 및 인증마크의 오용은 인증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인증조직이 광고, 카탈로그 등에 인증표시를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시정조치, 인증서 회수, 정정공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증심사원은 매 정규심사(사후,갱신) 시, 인증조직이 인증표시 및 홍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기술하여 OQS로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OQS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부적합보고서를 발행
- 시정조치 효과성 확인

인증결정권자는 상기 사안에 따라, "인증정지, 인증취소,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여부"를 결정합니다.